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·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도로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66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10. 25. 시행)됨에 따라,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지정·변경 또는 폐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) ①

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지원도의 지정·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 법 제12조,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,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·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도의 지정·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 법 제12조, 제13조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,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도의 지정 대상 및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.</u> <u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도의 지정·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.</u>